

4.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19일
- 제출자 : 윤기배 의원, 김지만 의원, 김재우 의원, 이시복 의원  
이진련 의원, 윤영애 의원, 장상수 의원, 전경원 의원  
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2일
- 상정일자 :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4차 교육위원회(2021년 12월 6일),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윤기배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-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
-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- 주요 내용으로는
  - ▶ 안 제2조에서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  - ▶ 안 제4조에서,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규정함
  - ▶ 안 제5조에서,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 - ▶ 안 제6조에서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검토 결과
  - ▶ 디지털 성범죄는 본 조례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카메라 등

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, 촬영물을 유포,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하며 나아가 디지털 공간, 미디어,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모두 의미함

- ▶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 텔레그램 ‘N번방 사건’ 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 발달에 따라 크게 확산되고 있고,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,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
- ▶ 또한,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점,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점,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,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, 수사·재판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노출되어 재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점 등 기존의 성범죄 양상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▶ 다만, 본 조례안 제2조2항에서 ‘학생’ 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, 교육부의 「2020 교육통계연보」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약5만2천여명의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

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도 가능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임

【 학교급 별 학업중단 학교밖 청소년 현황<sup>3)</sup> 】

구 분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합 계
학생 수	18,366명	10,001명	23,894명	52,261명

- ▶ 또한, 본 조례안 제2조3항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‘카메라나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·소지하거나,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·협박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’ 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하고 공유한 성적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3) 2020 교육통계연보, 교육부

## 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## 6. 수정안요지

○ 없 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